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593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공단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장
	3. [redacted]시장
	4. [redacted]시장
	5.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4구합965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2. 3.
판 결 선 고	2016. 3.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1. 17. 한 취득세 8,588,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나.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1. 21. 한 취득세 4,681,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다.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1. 21. 한 취득세 7,77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라.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1. 21. 한 취득세 2,415,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마. 피고 [redacted]시장이 2013. 12. 11. 한 취득세 1,340,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지방세법에서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한다는 규정은 공법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동하는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이윤활동을 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식의 실질적 지배권자, 즉 의결권 행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은 국가가 아닌 원고가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물건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달리 적용해야 할 근거나 필요성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는 국민연금법 제25조,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고, 그 업무의 법률적 효과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인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원고가 실제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가 국가에 귀속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주체는 국가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redacted]시장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과 관련하여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일 뿐, 간주취득 주체인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 [redacted]시장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강경구

판사 채동수